

의안번호	2200172
의 퇴 인	윤영석의원
회 답 일	2024. 07.31
추 계 번호	24D049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고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에 양산지원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9억 3,400만원, 2029년 9억 2,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78억 4,700만원(연평균 35억 6,9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 소속 양산지원 신설 (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5] 및 [별표7])	6,934	8,181	892	911	929	17,847	3,569

- 주: 1.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 소속 양산지원 신설(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5] 및 [별표7])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경주지원 등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2026년 3월 1일부터 양산지원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양산시법원을 중축하여 청사를 마련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3. 양산지원은 2026년 3월 1일부터 운영하므로 2026년 인건비 등(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는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별표1](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2](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5](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및 [별표7](시·군법원의 관할구역)	양산시를 관할하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양산시법원을 폐지하고, 울산가정법원의 관할구역(울산광역시, 양산시)에서 양산시를 제외하며,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 소속 양산지원을 신설함	의무규정
2	안 제2조제3항(설치) 신설	법원행정처는 3년마다 각급 법원 관할 구역의 사건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별표1](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2](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5](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및 [별표7](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
2	안 제2조제3항(설치) 신설	-	법원행정처는 기존 인력 등을 활용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관할 인구수가 유사하고 관할 자치단체 수가 각각 1개로 같은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가정법원 소속 경주지원¹⁾ 사례를 활용하여 추정
 - 개정안에 따라 양산지원이 신설될 경우 관할 인구수는 35만 5,122명으로 추정되고 현행 경주지원의 관할 인구수(24만 7,489명), 청사의 연면적, 공무원 정원 등을 활용²⁾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존 양산시법원 청사의 증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부대경비, 14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과 청사 입주 전까지의 사무실 임차료
 -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양산지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양산시법원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가정

1) 현행법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르면, 경주지원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에 동시에 소속되어 경주시를 관할하고 있으며, 1개의 민사·가사 합의부와 4개의 민사단독재판부, 2개의 형사단독재판부, 3개의 가사단독재판부로 구성되어 있고 판사 정원은 8명(현원은 7명)

2) 각 법원의 관할 인구수는 2023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중축이 완료되기 이전에 양산지원이 운영되므로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는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
 -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현행 경주지원의 공무원 수는 53명이고, 관할
인구수 비율 143.5%³⁾을 적용하면 양산지원의 공무원 수는 76명(=53명
×143.5%)으로 추정
 - 현재 양산시법원의 공무원 5명은 양산지원 소속으로 승계되고 울산지방법
원에서 57명⁴⁾이 전입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라 양산지원 설치
시 필요한 증원인력은 14명(=76명-5명-57명)으로 추정
- 양산지원이 설치되는 경우 판사가 증원될 수 있으나, 판사의 증원여부
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판사의 증원은
고려하지 않아 증축 면적 산정과 증원 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물가상승률⁵⁾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개정안 부칙에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5년부터 양산지원 청사의 중축을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양산지원의 관할 인구수는 경주지원 관할 인구수 대비 143.5%(=35만 5,122명÷24만 7,489명)

4) 신설되는 창원지방법원 소속 양산지원의 관할 인구수는 울산지방법원의 관할 인구수 대비 24.3%(= 35만 5,122명÷145만 8,783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양산시 등 관할지역의 사건을 담당하는 울산지방법원 공무원 정원 233명(2021년 기준) 중 24.3%는 양산지원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가정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7.)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6%	2.2%	2.2%	2.1%	2.1%	2.1%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청사 증축 비용

- 개정안에 따라 양산지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양산시법원의 청사를 증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9억 3,400만원, 2026년 72억 8,100만원으로 추정
 - 청사 증축비용은 필요한 증축 면적에 조달청의 「주요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의 단위 면적당 공사비를 곱하여 추정
 - (증축 면적) 양산지원 설치 시 필요한 총 연면적은 5,001㎡로 추정되고 현행 양산시법원의 건물연면적은 1,027㎡이므로 증축이 필요한 면적은 3,974㎡(=5,001㎡ - 1,027㎡)로 추정
 - 앞선 가정에 따라 양산지원의 정원은 76명이 되고 양산지원 설치 시 필요한 총 연면적은 5,001㎡⁶⁾
 - (단위 면적당 공사비)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유형별 공사비 단가(공공청사 중 유사사례의 2023년 기준 평균 단가 3,007,244원/㎡)를 곱하여 산출하고 2025년과 2026년에 50%씩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공사비 단가는 최근 3년(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5.0% 적용
 - (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공종별 요율⁷⁾(설계비: 4.03%, 감리비: 1.0%, 시설부대비: 0.23%)을 앞서 산출한 공사비에 곱하여 산출

[표 2] 양산지원 설치에 따른 증축 비용: 2025~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증축 비용	공사비	6,588	6,917
	설계비	265	279
	감리비	66	69
	시설부대비	15	16
	소계	6,934	7,2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양산지원 추정 공무원 정원(76명) × 경주지원의 1인당 건물연면적(65.8㎡)

7) 업무시설이므로 제2종(보통), 중급 요율 적용

나. 인건비 등

- 양산지원 설치 시 증원이 필요한 공무원 수는 14명으로 추정되고 직급별 증원 인원은 법원 소속 전체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⁸⁾을 적용하여 추정

[표 3] 양산지원 설치에 따른 직급별 증원 인원 추정

(단위: 명)

직급	법원의 직급별 비율	양산지원 증원 인원
고위공무원단	0.1%	0
3급	0.5%	0
4급	3.1%	0
5급	10.2%	1
6급	15.5%	2
7급	12.0%	2
8급	22.8%	3
9급	35.8%	5
합 계	100.0%	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양산지원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증원하는 경우, 인건비 등은 2026년 7억 9,400만원, 2029년 9억 2,900만원으로 추정
- (보수) 양산지원의 각 직급별 증원 인원⁸⁾에 직급별 1인당 보수를 곱하여 산출
 - － 직급별 보수는 대법원의 2024년 예산 각목명세서에 근거하여 직급별로 봉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
 - － 보수는 2024년 2.5%, 이후에는 최근 3년(2022~2024년) 공무원 보수 평균상승률 1.9% 적용

[표 4] 직급별 1인당 보수 추정: 2023~2029년

(단위: 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5급	8,138	8,341	8,500	8,661	8,826	8,994	9,165
6급	7,001	7,176	7,312	7,451	7,593	7,737	7,884
7급	6,042	6,193	6,311	6,431	6,553	6,677	6,804
8급	4,726	4,844	4,936	5,030	5,126	5,223	5,322
9급	4,087	4,189	4,269	4,350	4,433	4,517	4,6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대법원의 '2023년 사법연감'의 법원공무원 정원 통계에 근거함

[표 5] 양산지원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보수 추정: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5급	72	88	90	92
6급	124	152	155	158
7급	107	131	134	136
8급	126	154	157	160
9급	181	222	226	230
소계	610	747	762	776

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6년은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추정된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 요율⁹⁾을 곱하여 산출
- (기본경비) 추정된 보수에 2024년 예산 기준 대법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 경비 비율 6.2%를 곱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 2026년 한 해에만 자산취득비가 발생하며 공무원 증원 인원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1인당 자산취득비(502만원)를 곱하여 산출

[표 6] 양산지원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추정: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보수(a)	610	747	762	776
기관부담금(=a×요율)	81	99	102	105
기본경비(=a×6.2%)	38	46	47	48
자산취득비	65	—	—	—
소계	794	892	911	929

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6년은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사무실 임차료

□ 양산지원 청사에 입주 전까지의 사무실 임차료는 2026년 1억 600만원으로 추정

- 양산지원 운영을 위한 양산시법원의 증축은 2026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
- 사무실 임차료는 공무원 정원,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포함), 임차하는 기간을 곱하여 산출

9) 2026년 13.2%, 2027년 13.3%, 2028년 13.4% 2029년 13.5%

-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는 2023년 기준 13만원¹⁰⁾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7] 양산지원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등 추정: 2026년

구분		2026
양산지원	공무원 정원(a, 명)	76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b, 만원)	14
	임차료(=a×b×10개월, 백만원)	106

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6년은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양산지원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9억 3,400만원, 2029년 9억 2,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78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공사비와 부대경비	6,934	7,281	—	—	—	14,215
인건비 등	—	794	892	911	929	3,526
사무실 임차료	—	106	—	—	—	106
합계	6,934	8,181	892	911	929	17,847

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6년은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계 현황 연구), 63쪽」의 임차청사 1인당 월평균 환산임대료 130.2천원/명을 참고하기로 함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관할구역 수와 인구수가 유사한 법원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